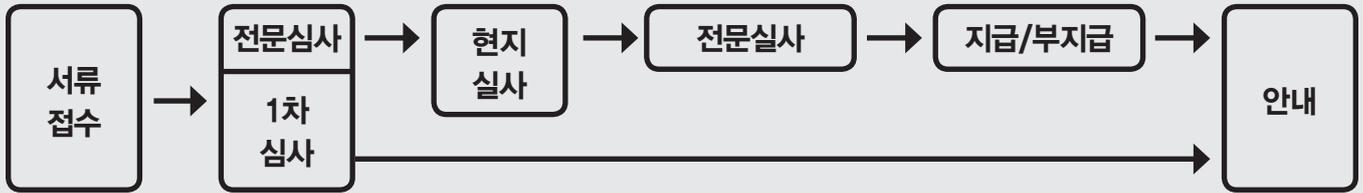


# [ 보험금 심사 절차 안내 ]

## 보험금 심사 절차



- ▶ 보험사는[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]에 따라 보험사고조사업무 등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고객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 및 질병정보 등에 대한 수집, 조사, 조회 및 제공, 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
- ▶ 심사전문회사인 에이원 손해사정(주)과 파란 손해사정(주)은 보험사고조사를 수행하는 회사로써, 카디프생명에 고객님의게서 청구하신 보험금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며, 현지 실사를 진행하는 경우 담당자가 고객님의게 별도로 연락을 드립니다.
- ▶ 카디프생명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 비용은 카디프생명이 부담합니다. 보험계약자 등은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고, 그 비용의 부담주체는 다음과 같습니다.

### ■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

-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카디프생명에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을 때
- 정당한 사유없이 카디프생명이 보험사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

### ■ 고객님의 부담하는 경우

- 카디프생명이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보험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아니한 때
- 카디프생명과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

## ■ 보험금 지급지연 및 가지급제도

- ☐ 보험금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, 별도 안내를 드리며 약관에 정한 바와 같이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.
- ☐ 가지급제도는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보험사고 조사를 시행하게 될 경우, 청구 보험금 중 조사나 확인이 필요없는 사항에 대한 보험금을 고객의 요청에 의해 먼저 지급해 드리는 제도입니다.(가지급 보험금은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% 이내로 산정됩니다.)

## ■ 의료 심사

보험수익자와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. 제3자는 의료법 제3조(의료기관)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장하며,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.

## ■ 보험금 부지급 결정에 대한 안내

보험금 지급심사결과, 보험금 부지급 사유가 발생 시 그 근거를 명시하여 안내하여 드립니다. 부지급 결정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회사내 소비자보호부로 문의하시면 재 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## ■ 보험금 청구 소멸 시효

상법 제662조(소멸시효)에 의거 보험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.